

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김태호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1488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9. 21.

발 의 자 : 김태호 · 서천호 · 조정훈
윤용근 · 김용태 · 김 건
김종양 · 유용원 · 김성원
신성범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경찰이 실종아동등의 조기 발견을 위하여 아동 등의 지문 및 얼굴 등에 관한 정보를 등록·관리할 수 있으며, 해당 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.

그런데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정보를 삭제하거나 허위로 변경하는 행위에 대한 금지 및 삭제·변경 이력 관리에 관한 사항이 법률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, 지문 등 정보 관리의 적절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음.

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지문 등 정보를 삭제하거나 허위로 변경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삭제·변경 이력을 보존하도록 함으로써 기록 관리 부실에 의한 수사 지연을 미연에 방지하려는 것임(안 제7조의4 신설 등).

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의4를 제7조의5로 하고, 제7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7조의4(지문등정보의 무단 삭제 금지 등) ① 경찰청장은 제7조의2제1항 및 제7조의3제1항에 따라 지문등정보를 등록·관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삭제하거나 허위로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② 경찰청장은 지문등정보를 삭제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일자와 사유를 기록하고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삭제 또는 변경 이력을 보존하여야 한다.

제18조제1호의2 중 “제7조의4”를 “제7조의5”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u>제7조의4(지문등정보의 무단 삭제 금지 등) ① 경찰청장은 제7조의2제1항 및 제7조의3제1항에 따라 지문등정보를 등록·관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삭제하거나 허위로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.</u> <u>② 경찰청장은 지문등정보를 삭제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일자와 사유를 기록하고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삭제 또는 변경 이력을 보존하여야 한다.</u>
<u>제7조의4(지문등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한) (생 략)</u>	<u>제7조의5(지문등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한) (현행 제7조의4와 같음)</u>
제18조(벌칙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 1. (생 략) 1의2. <u>제7조의4</u>를 위반하여 지문등정보를 실종아동등을 찾	제18조(벌칙) ----- ----- -----. 1. (현행과 같음) 1의2. <u>제7조의5</u>----- -----

기 위한 목적 외로 이용한 자	-----
1의3. (생략)	1의3. (현행과 같음)
2. ~ 4. (생략)	2. ~ 4. (현행과 같음)